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원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.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



2013년 3월 12일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원규정 제 62 호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원규정 일부개정 규정안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(회원의 의무)의 제2항 중 ‘이사회’의 결의’ 를 ‘총회의 결의’ 로 한다.

제9조(회원의 자격상실)의 제2항을 아래와 같이 하고,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10조(회비)의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1조(부담금, 찬조금 등)의 제2항 중 ‘회원 및 임원’ 을 ‘임원’ 으로 한다.

제12조(부담시기, 절차 및 통지)의 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복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.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



2013년 3월 12일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복무규정 제 63 호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복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(특별휴가)의 제1항 중 3호의 ‘1일’ 을 ‘5일’ 로 하고, 4호의 다목 중 ‘자녀’ 를 ‘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’ 로, 라목 중 ‘형제·자매’ 를 ‘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’ 로, 마목 중 ‘백숙부모’ 를 ‘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·자매’ 로 하고, 4호의 바목과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.

4. 사망

바.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2일

6. 입양 20일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